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시행 2022.12.28]
(제정) 2022.12.28 조례 제1874호

관리책임부서명 : 동물자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940-4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2.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 12. 28.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